#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2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박주민・이성윤・강준현

박정현 · 염태영 · 장종태

이강일 · 김남근 · 이기헌

이용우 • 박홍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 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

-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 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 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 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
- 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 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16조).
-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중개거 래계약에 따른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

도록 함(안 제17조).

- 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중개거래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제20조까지).
- 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 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재화 등 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 도록 하며, 이용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 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거.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 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9조).
- 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기구인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때 또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때,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0조).

법률 제 호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

- 나.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키워드, 음성, 문장 등의 입력어로 검색 요청이 있으면 모든 웹사이트에서 입 력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
- 다.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자료 등의 게시, 채팅(chatting) 등을 통하여 정보나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주는 서비스
- 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동영상 등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열 람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마.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 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서비스
-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4.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 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 5. "중개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로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온 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8.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 다.
- 9. "교차네트워크효과"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수 및 이용행태가 동일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들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 10. "멀티호밍(multihoming)"이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어느 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 여 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제5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고) 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

상인 자는 그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 2.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수가 월평균 1천만명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 개 이상일 것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및 공정시장가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이하 "시장지

배적 플랫폼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 문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일 것
- 3.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것
- 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가까운 미래에 예측되는 전망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 발행주식의 시가총액 등 사업규모
- 2.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 작용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의존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 3. 교차네트워크효과 및 데이터 집적효과로부터 파생된 진입 장벽. 이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

-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 권한과 분석능력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하는 수단이나 매개로 다른 온라 인 플랫폼을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는 효과
- 5.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서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갖는 특성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 제26조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지배 적 플랫폼 서비스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 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 권 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의 신청으로 그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내려진 경우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그지정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 유지 여부 검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목록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목록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 조제2호가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 제8조(자사우대 금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 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서 검색결과 정렬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표시에 자사 상 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비공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는 행위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9조(끼워팔기 금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신이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와 자사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부하여 제공하 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행위
  - 2.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시장지배 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사의 상 품 또는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0조(멀티호밍 제한 금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경쟁적 지위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만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와 경쟁적 지위에 있는 다른 온 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각종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1조(데이터 이동·접근 등 제한 금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그 이동 및 접근 등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공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2조(최혜대우 요구 금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서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경쟁제한성의 추정)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실제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 법령의 준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기능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제14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시의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

- 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 야 한다.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 주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연관된 서비스로서 특정한 유상 서비스의 이용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 3. 검색순위, 노출순위,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표시 사항의 기초 자료 및 표시 기준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정리·분석·이용하는 정보 및 그 수집·정리·분석·이용의 목적 및 조건
- 5. 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대상 정보 및 제공의 조건·방법
-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상담, 협의 등의 요청·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7. 그 밖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 이용 조건 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제16조(보고서 제출) 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

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개요
- 2.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현황
- 3.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정보공시 현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기재 사항, 그 밖에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4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 제17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에 따른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 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중개거래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개거래계약의 방법·절차 및 서명·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

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 제20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온라인 플랫폼 중 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
-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2조(재화 등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재화 등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의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 일로부터 40일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 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 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중개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중 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용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권리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 체(이하"이용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 다만, 복수의 이용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구성된 이용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협의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 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5조(고충처리 시스템)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시스템의 구성, 이용방법, 운영방식, 처리절차, 지원방법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장 시장조사

- 제26조(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2개

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이하 이 조에서 "최종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최종결정의 내용 및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자 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시장조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최종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한 시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사를 개시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여야

1. 최종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하다.

- 2. 최종결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정보가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로서 최종결정이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실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조사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조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제27조(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조사
  -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이 법 또는 하위 법령의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한 행위의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 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시장조사의 개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시장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조사 개시결정을 내려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조사 개시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조사목적
  - 2. 조사기간
  - 3. 조사의 쟁점에 관한 설명 및 조사내용
  - 4. 조사대상
  - 5.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시장조사에 필요한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장 위반행위 조사 및 행정처분 등

-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7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2.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 3.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제30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최후의 위반행위가 끝난 때로 한다.
  - ③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제31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재발 방지

-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32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3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 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 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 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 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미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⑥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34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6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 또는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재판을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다.
  -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 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7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 제38조(금지청구) 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 려가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 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 제40조(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위원회) ① 제26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문,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 랫폼 부문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 폼 부문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의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제41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자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장 벌칙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 2.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4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한 자
-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물건의 제출을 한 자
-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③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

- 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 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